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윤창이엔씨(강인동)

나. 전화번호 : ① 032-679-9623

2. 명칭 : 원격제어 및 측구부 적용이 가능한 상하 유압식 개량 다짐기를 사용하여 성능 회복 개질형 초속경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교면 포장 보수 공법(RHS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원격제어 및 측구부 적용이 가능한 상하 유압식 다짐기와 개량 진동모바일 믹서, 측면 파쇄기를 사용하여 성능 회복형 초속경화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교면 포장 보수 공법이다. 특히 개량된 상하 유압식 다짐기는 원격제어에 의하여 두께를 조정하고 측구부 적용이 가능함으로 작업의 시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실리카, 메타카올린, 개질폴리머를 혼입한 균열부에 대한 성능 회복기능을 가지는 개량 초속경 폴리머 시멘트를 적용함으로 품질확보에 의한 내구성과 안정적 성능을 실현하였다

<범위>

신청기술은 원격제어 및 측구부 적용이 가능한 개량형 상하 유압식 다짐기를 사용하여 성능 회복기능을 가지는 알에이치에스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교면 포장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고려열연(주)(김성진), ② 대림산업(주)(배원복), ③ (주)허브구조 엔지니어링(김형만), ④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임경호)

나. 전화번호 : ① 054-278-9111, ② 02-2011-8233, ③ 070-4789-1993, ④ 041-521-9493

2. 명칭 : 띠철근 사이에 평면상 팔각형의 나선형 보조 띠철근이 연속되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KSS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둥의 모서리에 배치되는 주철근을 횡구속하는 평면상 사각형 형상의 띠철근 사이에 기둥의 각 변에 배치된 주철근을 횡구속하도록 일정한 피치를 갖되 평면상 팔각형 형상을 이루는 나선형 내부 보조 띠철근이 연속되게 공장가공된 나선형 띠철근을 이용하여 심부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와 주철근의 좌굴을 방지하여 기둥의 연성능력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향상시키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이다

<범위>

기둥의 모서리에 배치되는 주철근을 횡구속하는 평면상 사각형 형상의 띠철근 사이에 기둥의 각 변에 배치된 주철근을 횡구속하도록 일정한 피치를 갖되 평면상 팔각형 형상을 이루는 나선형 내부 보조 띠철근이 연속되게 제작 및 시공되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